

의안번호	2204380
의 퇴 인	한지아의원
회 답 일	2024.12.17.
추 계 번호	24D4072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¹⁾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 개시 여부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 시 통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3,300만원~1억 6,300만원, 2030년 4,300만원~2억 1,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8,800만원~9억 4,000만원(연평균 3,800만원~1억 8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(시나리오1) 신청율 10%							
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(안 제30조의3 신설)	32	34	37	40	43	187	37
일반적 경과조치 (안 부칙 제2조)	0.8	—	—	—	—	0.8	0.17
합계	33	34	37	40	43	188	38
(시나리오2) 신청율 50%							
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(안 제30조의3 신설)	159	172	186	201	217	935	187
일반적 경과조치 (안 부칙 제2조)	4	—	—	—	—	4	0.87
합계	163	172	186	201	217	940	188

주: 1.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등이 심리 개시 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신청하는 비율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계(시나리오1: 신청율 10%, 시나리오2: 신청율 50%)

2. 통지방법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통지를 신청한 소년 보호사건 당 2회 통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통지방법과 신청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3.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437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를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3 신설 (피해자 등에 대한 통 지)	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 개시 여부, 심리의 일시·장소, 심리 결과, 임시조치 등 감호에 관 한 사항,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·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,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에도 심리 결과는 통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부칙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	안 제30조의3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보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함	의무규정
3	안 제49조의4(전문가의 의견 조회) 신설	수사기관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과 정에서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, 심리상태 등을 확인하 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·심리학자·사회사업가·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 음	재량규정
4	안 제67조의3(청소년비 행예방센터의 설치) 신 설	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0조의3 신설 (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)	○	—
2	안 부칙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	○	—
3	안 제49조의4(전문가의 의견 조회) 신설	—	미대상: 현행법 12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비용으로 7,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, 기존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67조의3(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) 신설	—	미대상: 전국 18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 운영 중에 있고,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사업 ‘청소년비행예방’에 편성된 예산 (2024년 54억 4,700만원)을 통해 사업수 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⁾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.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(안 제30조의3 신설)

□ 추계에서는 신청을 시나리오(10%, 50%)를 적용하고 통지를 신청한 소년 보호사건 당 2회 통지하는 것으로 가정

- 법무부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, 2023년 12월 기준 소년 보호사건 접수건수는 50,094건이고 이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소년 보호사건 접수건수가 연평균 6%³⁾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- 통지방법과 횟수는 등기우편 2회로 가정하고, 2024년 기준 등기우편 2회 요금은 5,120원⁴⁾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

□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 개시 여부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 시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3,200만원~1억 5,900만원, 2030년 4,000만원~2억 1,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소년 보호사건 심리 개시 여부 등의 통지에 따른 소요비용: 2026~2030년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년 보호사건 접수 건수(A, 건)		59,663	63,243	67,037	71,054	75,323
시나리오1 (신청율 10%)	통지 신청 ($B=A \times 10\%$, 건)	5,966	6,324	6,704	7,105	7,532
	우편요금 (C, 원)	5,332	5,439	5,547	5,658	5,772
	추가재정소요 ($=B \times C$, 백만원)	32	34	37	40	43
시나리오2 (신청율 50%)	통지 신청 ($B=A \times 50\%$, 건)	29,831	31,621	33,519	35,530	37,661
	우편요금 (C, 원)	5,332	5,439	5,547	5,658	5,772
	추가재정소요 ($=B \times C$, 백만원)	159	172	186	201	21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법무부 법원통계월보 기준 소년 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33,301건에서 2023년 50,094건으로 연평균 6% 증가

4) 경찰청의 2024년 예산 기준,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의 통지 등을 위한 등기 우편요금이 1건 당 2,560원

나. 일반적 경과조치(안 부칙 제2조)

- 개정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예상
- 2025년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 중 2.9%⁵⁾가 계속 중인 보호사건으로 남아 있고, 2026년에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신청을 시나리오(10%, 50%)를 적용하며 통지를 신청한 소년 보호사건 당 2회 통지하는 것으로 가정
 - 2025년 소년보호 사건 접수 건수(56,286건으로 추정)의 2.9%를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보호사건으로 가정
 - 통지방법과 횟수는 등기우편 2회로 가정하고, 2024년 기준 등기우편 2회 요금은 5,120원⁶⁾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- 추계결과,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보호사건의 경우에도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 개시 여부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 시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에 87만원~43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보호사건에 대한 통지에 따른 소요비용: 2026~2030년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
2025년 말 기준 계속 중인 소년 보호사건 추정건수(A, 건)		1,632	-	-	-	-
시나리오1 (신청율 10%)	통지 신청 ($B=A \times 10\%$, 건)	163	-	-	-	-
	우편요금 (C, 원)	5,332	-	-	-	-
	추가재정소요 ($=B \times C$, 백만원)	0.8	-	-	-	-
시나리오2 (신청율 50%)	통지 신청 ($B=A \times 50\%$, 건)	816	-	-	-	-
	우편요금 (C, 원)	5,332	-	-	-	-
	추가재정소요 ($=B \times C$, 백만원)	4	-	-	-	-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5) 법무부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, 2021~2023년 말 기준 소년 보호사건 접수 건수 대비 미처리건수의 비율은 각 1%, 6.3%, 1.3%로, 평균은 2.9%

6) 경찰청의 2024년 예산 기준,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의 통지 등을 위한 등기 우편요금이 1건 당 2,560원

다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 개시 여부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 시 통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3,300만원~1억 6,300만원, 2030년 4,300만원~2억 1,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8,800만원~9억 4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심리 개시 여부 등 피해자에 대한 통보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(시나리오1) 신청율 10%						
피해자 등에 대한 통보 (안 제30조의3 신설)	32	34	37	40	43	187
일반적 경과조치 (안 부칙 제2조)	0.8	—	—	—	—	0.8
합계	33	34	37	40	43	188
(시나리오2) 신청율 50%						
피해자 등에 대한 통보 (안 제30조의3 신설)	159	172	186	201	217	935
일반적 경과조치 (안 부칙 제2조)	4	—	—	—	—	4
합계	163	172	186	201	217	940

주: 1.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등이 심리 개시 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신청하는 비율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계(시나리오1: 신청율 10%, 시나리오2: 신청율 50%)

2. 통지방법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통지를 신청한 소년 보호사건 당 2회 통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통지방법과 신청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3.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통지 신청율을 10%와 50%, 통지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